

- 신규채용자 잠복결핵 검진 실시 안내 -

1. 관련 근거

-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(결핵검진 등), 제32조(취업제한 금지), 제34조(과태료 부과)
- 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(결핵검진 대상자 등)

2. 이행 대상기관: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

3. 검진대상: 유치원, 학교의 종사자 및 교직원 전체

4. 검진시기

- (잠복결핵감염 검진) 기관·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
 - ※ 다른 기관·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므로, 같은 기관·학교 간의 이동(A학교에서 B학교로 소속 변경) 뿐만 아니라 타 기관·학교 간의 이동(A어린이집에서 B학교로 소속 변경)에도 1회만 실시
- 학교에서 근무하는 신규 교원 및 직원은 신규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등(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)을 실시
- 검진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따라 검진기관의 확인서 보유 기간이 제한되므로 잠복결핵검진 확인서는 개인이 보관
- 소속 기관에서는 개인별 검진확인서를 통해 검진 여부 확인(개인별 검진결과서 제출은 불필요)

5. 잠복결핵감염 검진방법: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(TST)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(IGRA)

잠복결핵 검진은 생애 최초 1회 실시가 원칙이며, 과거 검진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검진 미실시 (자세한 사항은 배정된 학교에 문의)